##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60

발의연월일: 2025. 3. 12.

발 의 자:김위상・이달희・임이자

김선교 • 박성민 • 이인선

구자근 · 송석준 · 박충권

김재섭 · 박성훈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이에따라 정년을 둔 사업장은 대부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2033년 65 세로 늦춰지면서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 격차가 더 벌어지 는 '은퇴 후 소득 공백' 문제가 본격 대두되고 있음.

앞서 우리나라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, 법으로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, 정년 연장,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계속고용 방안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도를 연착륙시킨 바 있음.

이에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

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,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하여 고용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, 고용시장 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(안 제21조, 제22조 등).

#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 제목 "(정년퇴직자의 재고용)"을 "(고령자의 고용안정 의무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중 "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"를 "사업주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하는 경우"로한다.

- ① 사업주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1. 「국민연금법」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될 때까지 정년의 연장
- 2.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으로 재고용하는 제도의 시행
- ② 사업주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제19조의2제 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.

제21조의2를 삭제한다.

제22조의 제목 "(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)"을 "(고령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고령자의 고용안정 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, 「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 업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·단체와 그 기관·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·단체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: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

- 2. 상시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: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
- 3.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: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
- 4.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 장: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
- 5.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: 시행 후 7년이 경과한 날

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아 혅 제21조(고령자의 고용안정 의무) 제21조(정년퇴직자의 재고용)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① 사업주는 고령자의 고용안정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 한다. 1. 「국민연금법」 제61조제1항 하여야 한다. 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될 때까지 정년의 연 장 2.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 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 는 경우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으로 재고용하는 제 도의 시행 ② 사업주가 제1항제1호에 따라 <신 설>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제19조의 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 한다.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 ③ 사업주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하는 합의에 의하여 「근로기준법」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(年

次有給)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

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.

| M21조의2(정년퇴직자의 재고용 | <삭 제> 지원)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 | 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 | 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 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|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 |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2조<u>(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)</u> (생 략)

<신 설>

•		

제22조(고령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)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제21조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